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청년예술청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1448번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20년 4월 3일
- 회 부 일 : 2020년 4월 8일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청년예술청을 출연기관인 (재)서울문화재단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 재 지 :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-1, 지하2층
- 사 용 자 : (재)서울문화재단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252 $m^2$ , 건물 연면적 1,877 $m^2$
- 사용허가 기간 : 2020. 5. 1. ~ 2023. 4. 30.(3년)

#### 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‘청년예술청’은 청년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예술기획, 예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市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(문화예술활동 지원)로 운영할 예정
- 이는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상 면제요건에 충족하며,
- 유상사용 허가의 경우, 문화본부 세출(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)·세입(사용료 징수)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며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치세(국세) 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0.3.19.)
 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  - 심의결과 : ‘적정’ (공유재산 사용료 면제)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청년예술청(서대문구 충정로3가 72-1, 지하2층)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 스스로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협치모델을 실험하고 청년예술인 간의 상호 동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예술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예술계 내 높은 진입장벽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.

### 〈 청년예술청 추진경위 〉

- '16. 12 : 충정로 청년주택 내 청년예술청 조성 협의완료
- '17. 3 ~ 6 : 충정로3가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
- '19. 5 : 청년예술청 운영주체 선정(서울문화재단)
- '19. 2. ~ 12. : 청년예술청 조성 관련 설계 및 인테리어 협의
  - 청년예술청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, 장비구매 리스트 협의 등
- '20. 1 : 충정로3가 청년주택 준공
- '20. 2 : 청년예술청 인테리어 공사 및 장비 구매

- 문화본부는 청년예술청 업무가 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(문화예술활동지원)로 운영할 예정인데 청년예술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화본부의 세입(사용료 징수)·세출(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) 간 상계(相計)가 반복되고, 국세(부가가치세) 지출부담 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추진하였고, 2020년 3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

따라 '적정' 결과를 받았음.

### 〈 사용료 면제 대상 공유재산 현황 〉

- 위 치 : 서대문구 총정로3가 72-1, 지하2층
- 청년예술청 연면적 : 1,660.22㎡/503평(지하2층)
- 용 도 : 프로젝트, 코워킹, 공유, 작업 공간, 회의실, 사무실
- 허가기간 : '20. 5. 1. ~ '23. 4. 30. [3년]
- 기준가격 : <토지> 1,459,229천원 [㎡ 당 공시지가 5,786천원 × 면적 252.2㎡]  
<건물> 1,475,665천원 [시가표준액]
- 감면사용료 : 29,349천원 [기준가격 × 요율(10/1000)] [부가세 제외]

- 사용료 면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, '청년예술청'은 청년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서, 예술기획, 예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고유사무(문화예술활동 지원)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, 서울시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」 등의 면제 요건을 충족함.

###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2. (생략)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- 사용료 면제기간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문화본부는 ‘청년예술청’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,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(5년 이내) 내에 있음.

##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」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- 사용료 면제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, 법령은 사용요율의 최저 기준(1천분의 10이상)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는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1천분의 10이상으로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음.

##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
##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
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6.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

### 〈 청년예술청 감면사용료 〉

사업명	구분		내역			
	심의사항	대상	수량	면적(m <sup>2</sup> )	기준가격(천원)	감면사용료(천원)
청년예술청 운영	사용료 [신규]	토지	1	252.2	1,459,229	14,592
문화본부 문화예술과		건물	1	1,877.78	1,475,665	14,757

- 본 동의안은 ‘청년예술청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감면사용료는 본 재산 기준가액의 1,000분의 10범위내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